

인천지방법원 2024. 6. 21 선고 2024가단2233 판결 [연대보증채무금]

전 문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4. 5. 24.

판 결 선 고 2024. 6. 2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3. 7.부터 2024. 6.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의 아들은 원고이고, D는 딸이다. 이 사건 대여금 중 9,000만 원은 아버지를 통하여 D의 통장에서 2020. 11. 26. 2,000만 원, 2020. 11. 27. 1,000만 원, 2020. 11. 30. 2,000만 원, 2021. 11. 26. 2,000만 원, 2021. 11. 29. 2,000만 원을 피고에게 송금하였고, 이 사건 대여금 중 7,000만 원은 지인 E이 자신의 통장에서 2020. 11. 27. 5,000만 원, 2021. 11. 26. 2,000만 원을 피고에게 송금하였으며, 피고는 주채무자 F의 처로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에 있어서 채무자의 연대보증인이 되어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이행을 할 책임을 지는 사람이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1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 단

1) 갑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F을 차용인, 피고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60,000,000원을 2021. 12. 26.까지 차용하는 내용의 차용증이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위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날인 2024. 3. 7.부터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6.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위 차용증 기재 60,000,000원 외에 100,000,000원에 대하여도 피고를 상대로 연대보증채무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60,000,000원을 초과하는 채무에 대하여도 피고가 연대보증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희

1) 원고는 약정이자율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았고,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만을 구하였음.